

「개인형IRP 핵심설명서」

이 설명서는 개인형IRP 가입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자세한 설명은 개인형IRP 계약서와 운용상품별 투자·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수수료 부 과	◇ 개인형IRP 계좌에는, 수수료 계산일 전일의 적립금 평가액 을 기준으로 아래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운용·자산관리수수료 가 각각 부과됩니다.								
	구 분	대면개설시 연간 수수료율				온라인개설시 연간 수수료율			
		운용관리수수료율		자산관리수수료율		운용관리수수료율		자산관리수수료율	
	고 객 납입액	1억원미만	0.08%	1억원미만	0.20%	1억원미만	0.02%	1억원미만	0.20%
		1억원이상	0.07%	1억원이상	0.18%	1억원이상	0.02%	1억원이상	0.18%
	퇴직금	1억원미만	0.25%	1억원미만	0.20%	1억원미만	0.15%	1억원미만	0.20%
1억원이상		0.20%	1억원이상	0.18%	1억원이상	0.15%	1억원이상	0.18%	
* 개인형IRP에는 고객이 자기부담으로 납입할 수도 있고, 퇴직후 퇴직금(퇴직급여)을 납입할 수도 있음									
** 기타 수수료 할인조건 및 연금수령단계 수수료율은 운용·자산관리약관(계약서)에서 확인 가능함									
*** 수수료 계산식 : 대상기간 적립금평가액 평균잔액 x 수수료율 x 경과일수÷365(366)									
※ 금융회사별 수수료 비교는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에서 확인가능함									
◇ 이와 별개로, 고객이 적립금을 펀드 로 운용할 경우에는 해당 운용금액에 대해 펀드보수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보수율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또는 간이투자설명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세 제	◇ 고객이 자기부담으로 납입한 금액은 연말 세액공제(13.2~16.5%)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공제액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과세									
연금수령 조 건	◇ ① 만 55세 이상으로 ② 가입일부터 5년 경과시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연간 수령액은 소득세법(시행령 40조의2)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수령해야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퇴직금이 입금된 개인형IRP계좌는 만 55세이상 조건만 충족하면 연금수령이 가능									
연 간 납입한도 설 정	◇ 소득세법상(시행령 40조의2) 연간 자기부담금 납입한도를 최대 1,800만원*까지 설정(모든 금융회사의 IRP 및 연금저축계좌를 합산)할 수 있으므로, 계좌당 납입한도를 너무 높게 설정할 경우에는 다른 연금계좌 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 세액공제를 받는 기준금액은 700만원인 반면, 고객이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800만원임									
적립금 운 용	◇ 고객이 적립금을 대기성 자금(고유계정대)으로 운용할 경우 수익률이 저하 될 수 있습니다.								
	◇ 운용상품 교체·해지·계약이전을 위해, 원리금보장상품을 만기전에 매도할 경우에는 만기 약정금리 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마찬가지로, 일부 펀드상품(특히, 만기가 정해진 펀드)은 편입한 후 단기간내(예: 2년)에 환매할 경우에는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및 환매수수료율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성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라 기업대출 거래 중(예정)인 중소기업·중소기업대표자·개인사업자 및 개인대출 거래 중(예정)인 개인 금융소비자(피성년 후견인·피한정 후견인 포함)은 「여신실행(대출 신규, 대출 연장 등) 전·후 1개월간 개인형 IRP 신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형IRP 가입 후 1개월 이내 대출 거래(대출 신규, 대출 연장 등) 예정인 고객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개인형IRP 핵심설명서 세부내용」

1-1 개인형IRP 개요

구 분	내 용														
 제도개요	개인형IRP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란? 가입자의 개인부담금과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신탁계좌에 적립하고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 (정기예금, 펀드 등)에 자유롭게 운영하여 향후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퇴직연금제도 (개인부담금은 세액공제 혜택, 퇴직금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율과세)														
 가입대상 및 증빙서류	➤ 가입대상 - 퇴직연금제도(DB/DC/기업형IRP) 가입자 - 근로자, 자영업자, 직역연금가입자 등 - 퇴직금 수령(예정)자 ➤ 가입대상 증빙서류 <table><tr><th>가입대상</th><th>증빙서류 (택 1)</th></tr><tr><td>퇴직금 일시금 수령 예정자</td><td>생략 가능</td></tr><tr><td>당행 퇴직연금 가입자</td><td>생략 가능</td></tr><tr><td>타금융기관 퇴직연금 가입자</td><td>퇴직연금제도가입사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td></tr><tr><td>자영업자</td><td>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산재보험가입확인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수당직 사업소득자는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도 가능</td></tr><tr><td>퇴직금제도근로자 퇴직연금제도(DB/DC/기업형IRP) 미가입 근로자 1년 미만 / 단시간근로자</td><td>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 근로자면 모두 가능</td></tr><tr><td>직역연금가입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군인)</td><td>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td></tr></table>	가입대상	증빙서류 (택 1)	퇴직금 일시금 수령 예정자	생략 가능	당행 퇴직연금 가입자	생략 가능	타금융기관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사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산재보험가입확인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수당직 사업소득자는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도 가능	퇴직금제도근로자 퇴직연금제도(DB/DC/기업형IRP) 미가입 근로자 1년 미만 / 단시간근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 근로자면 모두 가능	직역연금가입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군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가입대상	증빙서류 (택 1)														
퇴직금 일시금 수령 예정자	생략 가능														
당행 퇴직연금 가입자	생략 가능														
타금융기관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사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산재보험가입확인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수당직 사업소득자는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도 가능														
퇴직금제도근로자 퇴직연금제도(DB/DC/기업형IRP) 미가입 근로자 1년 미만 / 단시간근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 근로자면 모두 가능														
직역연금가입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군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가입방법	➤ 영업점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단, 해지는 영업점 창구, 인터넷뱅킹에서만 가능)														

1-2 개인형IRP 개요

개인부담금 납입한도	➤ 개인부담금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전 금융기관 DC/기업형IRP/개인형IRP 개인부담금, 연금저축 합산) + ISA 만기계좌 금액 · (변경 전) 연간 1,800만원 이내 → (변경 후) 연간 1,800만원 + ISA 만기계좌 금액 ·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은 2021.3.14.부터 가능 · 세무우대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으로, 한도를 높게 설정할 경우에는 다른 세무우대 연금계좌 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개인부담금 세액공제	➤ 개인부담금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가정) · 연 최대 700만원* +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 · 만 50세 이상 가입자 세액공제 한도 확대(연 700만원→연 900만원) - 적용기한 : 한시적 적용(2020.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적용기한은 2022.12.31. 까지) - 예외대상 : 총급여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기존 공제한도(연 700만원) 유지 ➤ 개인부담금 세액공제 효과 예시(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가정) <table> <tr> <th colspan="2">구분</th><th>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th><th>최대 세액공제액</th></tr> <tr> <td rowspan="2">개인부담금 700만원 입금시</td><td>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td><td>16.5%</td><td>1,155,000원</td></tr> <tr> <td>종합소득 4천만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초과</td><td>13.2%</td><td>924,000원</td></tr> </table> · 세액공제 전 결정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작을 경우 최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함	구분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세액공제액	개인부담금 700만원 입금시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1,155,000원	종합소득 4천만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924,000원
구분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세액공제액									
개인부담금 700만원 입금시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1,155,000원									
	종합소득 4천만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924,000원									

수수료	➤ 납부시기 및 방법 : 매년 계약응당일(최초입금일) 또는 지급일에 적립금에서 자동 차감 ➤ 수수료율 (단위: 연, %) <table> <tr> <th colspan="2">구분</th><th>운용관리</th><th>자산관리</th><th>합계</th></tr> <tr> <td rowspan="2">개인부담금</td><td>1억원 미만</td><td>0.08 (0.02)</td><td>0.20</td><td>0.28 (0.22)</td></tr> <tr> <td>1억원 이상</td><td>0.07 (0.02)</td><td>0.18</td><td>0.25 (0.20)</td></tr> <tr> <td rowspan="2">퇴직금</td><td>1억원 미만</td><td>0.25 (0.15)</td><td>0.20</td><td>0.45 (0.35)</td></tr> <tr> <td>1억원 이상</td><td>0.20 (0.15)</td><td>0.18</td><td>0.38 (0.33)</td></tr> </table> · () :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한 계좌 신규시 적용수수료율이며 최초 입금일로부터 1년 이상 유지시 적용 · 장기계약 할인 :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6차년도 15%, 7차~9차년도 18%, 10차년도 이후 20% · 사회초년생 할인 : 만34세 이하 최초 입금 고객 운용관리수수료 20% 할인 · 연금수령 할인 : 1회 이상 연금수령 고객 운용관리수수료 30% 할인 · 누적수익 '0' 이하인 가입자에 한해 운용/자산관리수수료 감면 「누적수익」= (적립금자산/신탁재산평가액 + 인출액 - 부담금납입액) - 차감예정수수료 · 수수료율 구간은 개인부담금과 퇴직금을 합산하여 적용 · 계산식 : 신규일(직전 계산일)~금번 계산일 전일의 적립금평가액 평균잔액×수수료율×경과일수÷365(366) · 계약이전 시 他퇴직연금사업자의 최초 개인형IRP 계약일을 증빙하는 경우 경과년수에 따른 장기계약 할인 신청 가능 (개인형IRP간 계좌이체 限) · 퇴직금 최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지하는 경우 퇴직금 수수료 면제(단, 계약이전·중도인출시 징수)	구분		운용관리	자산관리	합계	개인부담금	1억원 미만	0.08 (0.02)	0.20	0.28 (0.22)	1억원 이상	0.07 (0.02)	0.18	0.25 (0.20)	퇴직금	1억원 미만	0.25 (0.15)	0.20	0.45 (0.35)	1억원 이상	0.20 (0.15)	0.18	0.38 (0.33)
구분		운용관리	자산관리	합계																				
개인부담금	1억원 미만	0.08 (0.02)	0.20	0.28 (0.22)																				
	1억원 이상	0.07 (0.02)	0.18	0.25 (0.20)																				
퇴직금	1억원 미만	0.25 (0.15)	0.20	0.45 (0.35)																				
	1억원 이상	0.20 (0.15)	0.18	0.38 (0.33)																				

2 운용방법

구 분	내 용																		
 운용자산	➤ 예금, 펀드, 현금성자산(고유계정대) 등 - 주식형/주식혼합형/하이일드 펀드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총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 가능하고 채권형/채권혼합형(주식 40%이하, 투기등급채권 30%이하) 펀드는 100%까지 투자 가능함 - 정기예금 만기시 동일상품으로 자동 재예치되며, 상품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재예치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은행의 정기예금으로 변경될 수 있음 (가입자가 원할 경우 만기 전 상품 변경 가능) - 저축은행 정기예금은 예금자보호한도인 1인당 최고 5천만원 내 투자 가능함. - 매수시점마다 해당 금융기관에 고시된 계약 기간별 이율 적용되며, 각 상품별 적용이율이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품의 상품설명서 참조																		
 매수·매도 소요기간	➤ 운용자산별 소요기간 <table><tr><th>구분</th><th>정기예금</th><th>국내채권형 펀드</th><th>국내채권혼합형 펀드</th><th>국내주식형 펀드</th><th>기타상품</th></tr><tr><td>매수</td><td>D+1</td><td>D+2</td><td>D+2~3</td><td>D+2</td><td>D+2~3</td></tr><tr><td>매도</td><td>D+1</td><td>D+3</td><td>D+4~5</td><td>D+4</td><td>D+4~14일</td></tr></table> • 매수·매도 신청일이 D일이며 소요기간은 은행 영업일 기준 • 매수·매도 운용지시는 신청일 다음 영업일에 실행되며, 소요기간은 판매회사와 운용회사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상품별 투자·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 펀드의 경우 투자설명서 내 기재된 매수/매도 [17시(15시30분)이전 기준] 기준가 적용일자 및 지급일자보다 +1영업일이 소요됨 ➤ 지급/해지시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매도 소요기간+1영업일이 소요됨 ➤ 매도의 경우 운용중인 모든 상품이 매도가 완료되어야 지급이 가능함	구분	정기예금	국내채권형 펀드	국내채권혼합형 펀드	국내주식형 펀드	기타상품	매수	D+1	D+2	D+2~3	D+2	D+2~3	매도	D+1	D+3	D+4~5	D+4	D+4~14일
구분	정기예금	국내채권형 펀드	국내채권혼합형 펀드	국내주식형 펀드	기타상품														
매수	D+1	D+2	D+2~3	D+2	D+2~3														
매도	D+1	D+3	D+4~5	D+4	D+4~14일														

3 연금수령/해지/중도인출

구 분	내 용
 연금수령	➤ 연금수령 요건 : 만55세 이후부터 연금신청 가능 - 단, 개인부담금만 있는 경우 만55세 이후 & 최초 입금일부터 5년 경과 후 연금신청 가능 ➤ 연금수령방법 - 수령주기 : 월/분기/반기/년 단위 중 택1 - 수령기간 : ①10년 이상~40년 이내 또는 ②100세 만기 중 택1 • 2013.3.1 전 개설한 계좌 또는 2013.3.1. 전 DB·DC·기업형IRP에 퇴직금이 입금된 경우에는 5년이상 연금수령 가능 •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시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적용 - 연금수령한도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총액÷(11-연금수령연차)]×120% - 연금수령연차 : 연금수령 요건을 갖춘 해를 1년차로 기산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 (단, 2013.3.1. 이전 가입한 연금계좌는 연금수령요건을 갖춘 해를 6년차로 기산) - 연금수령연차가 11년차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수령한도 제한 없음 ➤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전 금융기관 합산 1,2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신고 대상 (단, 퇴직금 원금은 종합소득 합산 제외)
해 지 (일시금수령)	➤ 자유로운 계좌 해지 가능 (단, 일부해지는 불가) - 해지를 신청한 당일은 해지 자금 수령이 불가하며, 운용 중인 모든 상품의 매도가 완료된 후 일괄 지급 가능하며, 운용 중인 상품에 따라 지급/해지 소요일수가 다름.
중도인출	➤ 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임차보증금(1회만 가능),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단, 2020.4.30. 이후 소득세법시행령의 의료비 및 의료비용 요건 추가), 개인회생, 파산선고, 사회재난 등 ➤ 인출가능 금액 : 예정수수료+10만원을 제외한 전액

4 적용세제



 적용세제

구 분	내 용		
 적용세제	> 적립금 구성 체계		
	퇴직금	자기부담금 중 세액공제 받은 원금	운용수익 (퇴직금, 자기부담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자기부담금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해지 전 과세제외 요청 또는 해지 후 환급요청 가능)	
	> 적용세제		
구 분	연금수령 (연금수령 한도 이내)	일시금수령(해지)	부득이한 경우
퇴직금	퇴직소득세×70%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70%
자기부담금+운용수익	연금소득세 (3.3~5.5%)	기타소득세 (16.5%)	연금소득세 (3.3~5.5%)
	• 퇴직소득세는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10%) 별도 • 연금소득세율 : 만 80세 이상 3.3%, 만 70세 이상 4.4%, 그 외 5.5%(지방소득세 포함) • 개인형IRP 인출순서*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기부담금 원금→퇴직금→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 원금→운용수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에 따름 • 부득이한 경우 : 가입자 사망·해외이주·파산·개인회생/가입자 및 부양가족 질병·부상(3개월이 상 요양)/천재지변 - 요양지출금액 : 의료비+간병비+(본인 휴직·휴업 월수×150만원)+200만원 - 해외이주 : 2017.2.3. 이후 입금한 퇴직금이 있는 경우 입금 후 3년 이후 이주에 한함		
	> 퇴직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 혜택 확대		
	• 수령기간 10년 이하시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시 퇴직소득세의 60% 적용 *2020.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 자기부담금에 대한 기타소득세(16.5%) 부과로 해지시 수령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음		

5 유의사항

- >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납입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연금저축계좌(개인형퇴직연금계좌 포함)로 계좌이체 가능합니다.
(단,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계좌 간의 이체는 「①만 55세 이상 ②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능)
- > 연금수령 신청시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에서 발급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연금수령연차가 5년차 이내이면서 연금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신청시, 연간 연금수령한도 초과액 발생으로 퇴직소득세의 100% 또는 기타소득세(16.5%)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 예금성 상품의 경우 상품의 만기 이전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으로 수익이 감소 될 수 있습니다.
-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저축은행정기예금도동일).
- >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따라 개인형IRP 적립금으로 운용하는 저축은행 정기예금의 상품 투자한도는 예금자보호 한도인 5천만원(저축은행별)과 동일하며, 당행은 만기시 발생할 이자금액을 감안하여 저축은행별 원금기준 45백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타 금융기관과 복수로 퇴직연금 거래시 가입자 본인이 저축은행별 투자한도가 초과하지 않도록 운용하여야 합니다.
- > 투자성 상품(집합투자증권 등) 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투자성 상품(집합투자증권 등)의 과거의 운용실적은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당사는 투자성 상품(집합투자증권 등)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1항에 따라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판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2021.05.17.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세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을 통해서 상품운용, 자산현황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영업점, 우리은행 퇴직연금 고객센터(1599-1000/09:00~18:00), 인터넷홈페이지(www.wooribank.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